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1년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인상률	10.00%	9.99%	4.28%	4.63%	4.62%	4.13%

1) 방문요양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14,750	2,213	15,430	2,315
60분	22,640	3,396	22,380	3,357
90분	30,370	4,556	30,170	4,526
120분	38,340	5,751	38,390	5,759
150분	43,570	6,536	44,770	6,716
180분	48,170	7,226	50,400	7,560
210분	52,400	7,860	56,170	8,426
240분	56,320	8,448	61,950	9,293

2) 방문목욕

구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4,450	11,318	78,580	11,787
차량이용(가정 내)	68,030	10,205	70,580	10,628
차량 미 이용	42,480	6,372	44,240	6,636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원)	본인 (15%)	본인 (9%)	본인 (6%)	구 분	금액 (원)	본인 (15%)	본인 (9%)	본인 (6%)
30분	15,430	2,315	1,389	926	150분	44,770	6,716	4,029	2,686
60분	22,380	3,357	2,014	1,343	180분	50,400	7,560	4,536	3,024
90분	30,170	4,526	2,715	1,810	210분	56,170	8,426	5,055	3,370
120분	38,390	5,759	3,455	2,303	240분	61,950	9,293	5,576	3,717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 급여
일반	15%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기초수급권자	0%